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
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당초)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구미시 발주, 준공일부터 1년 이내)
(변경) 구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나. 부실공사 신고기한 개선(안 제9조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을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담당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실측정”을 “부실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현장점검”을 “현장 점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실측정”을 “부실 측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을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으로, “관리 하고”를 “관리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실측정, 민원제기”를 “부실 측정, 민원 제기”로, “현장점검”을 “현장 점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를 “부실공사 신고

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공기록”을 “시공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을 “감독 업무 수행 공무원”으로,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를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판정결과의 조치)”를 “(판정 결과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판정결과”를 “판정 결과”로,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을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상대자”를 “계약 상대자”로, “서약서를 징구”를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u>담당공무원</u>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p>3.·4.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u>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u></p> <p>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건설공사의 <u>부실측정</u>에 관한</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 ----- -- <u>담당 공무원</u> ----- ----- --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u>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u>)가 발주하는 <u>건설공사로 한정한다.</u></p> <p>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 ----- ----- -----.</p> <p>1. ----- <u>부실 측정</u>-----</p>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
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
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
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
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
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
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
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
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2. ----- 현장 점검---

3.·4. (현행과 같음)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 부실 측
정-----.

② ----- 부실 측
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

관리하고-----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

검) ----- 부실 측정,
민원 제기-----
----- 현장 점
검 -----
-----.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거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일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

----- 시공 기록-----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판정 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

-----.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
감독 업무 수행 공무원-----

----- 따
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

제13조(판정 결과의 조치) -----
----- 판정 결과-----

----- 관련 법령에 의거 관
계 기관-----
-----.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요
구) -----
----- 계약 상대자-----

-----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
· 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
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
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히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이 순 애
	팀 장	정 은 진
	담 당 자	최 문 주 (480-6084)